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89호 2017. 4. 26.(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7-5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 3
- 거창군 고시 제2017-52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 5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524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6
- 거창군 공고 제2017-525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등 공시  
송달 공고(02월분) ..... 10
- 거창군 공고 제2017-526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공시송달  
공고(02월분) ..... 12
- 거창군 공고 제2017-535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 14

거창군 공고 제2017-536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33

거창군 공고 제2017-545호 장팔리(소로3-5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  
계획 공고 ..... 55

거창군 공고 제2017-548호 거창군세 기본조례(시행규칙포함) 전부개정안 및 거  
창군세 징수조례(시행규칙포함) 제정안 입법예고 ..... 61

거창군 공고 제2017-551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 결정(변경) 열  
람공고 ..... 117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4. 2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62-26 외 1건(부여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47	2009-04-01	2017-04-26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 된 세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23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62-26	2009-04-01	2017-04-26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거창군수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위탁기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1. 제안이유

- 가. 개정민법(2013.7.1.) 시행된 이후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효력은 '18.6.30.까지 존속하여 상위법에 맞게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
- 나.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안 제7조, 제12조, 제16조)

### 2. 주요내용

- 가. 부 칙 ~ 경과규정 적용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안 제7조, 제12조, 제16조)

- 상위법령 근거없는 신고의무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단서)
- 사용료 미반환규정 삭제(제12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보증금 납입사유 외에 조례로 규정된 보증금납입 규정 삭제(안 제16조)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거창군 조례 제2217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과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변경시(설비포함)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제12조(사용료 반환)                      ① <u>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② (생 략)</p> <p>제16조(계약보증금) ① <u>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 금고에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u>                      ② <u>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u></p> <p>부칙(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7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                      -----                      -----&lt;단서 삭제&gt;</p> <p>제12조(사용료 반환)                      &lt;삭 제&gt;                      ② (생 략)</p> <p>&lt;삭 제&gt;</p> <p>부칙(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1호,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4. 21. ~ 2017. 05. 05.(15일간)
- 공고대상 : 불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4월 20일

# 거 창 군 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안내 우편물 반송내역(2017년02월)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비고
1	84다1196	강*열	2017.02.0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하곡*길 **-***	이사감	1603501344304	
2	85보4816	장*균	2017.02.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길 ** ***동 ****호	폐문부재	1603501344324	
3	87보9497	이*권	2017.02.0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상월포길 *	수취인부재	1603501344327	
4	85루9962	서*석	2017.02.0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내촌길 **-***	이사감	1603501344910	
5	84다1196	강*열	2017.02.0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하곡*길 **-***	이사감	1603501344931	
6	97우1751	차*원	2017.0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길 **-***	폐문부재	1603501344308	
7	56누6379	하*래	2017.0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호	폐문부재	1603501344318	
8	경남71너3066	고*선 ****텍	2017.0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방티재로 ****-**	폐문부재	1603501344322	
9	97마1220	이*화	2017.0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길 ** ***동 ****호	폐문부재	1603501344330	
10	49수3620	노*성	2017.0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폐문부재	1603501344298	
11	65주4316	정*국	2017.0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길 ** ***호	폐문부재	1603501344301	
12	97우1751	차*원	2017.0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길 **-***	폐문부재	1603501344935	
13	10서8958	기*도	2017.02.10	경상남도 거창읍 강남로 ** ***호	폐문부재	1603501344898	
14	19고3334	박*곤	2017.0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 ***호	폐문부재	1603501344900	
15	65주4316	정*국	2017.0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길 ** ***호	폐문부재	1603501344930	
16	49수3620	노*성	2017.0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폐문부재	1603501344927	
17	85수6526	권*영	2017.02.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	폐문부재	1603501344911	
18	62마3850	이*현	2017.0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길 ** ***동 ***호	폐문부재	1603501344928	
19	26무9108	어*선	2017.02.2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	폐문부재	1603501345792	
20	26로4655	이*로	2017.02.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길 ** ***호	폐문부재	1603501345791	
21	87보9481	김*수	2017.02.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길 ** ***호	폐문부재	1603501345798	
22	67어4111	라*철	2017.02.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길 ** *층 *호	폐문부재	1603501345793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04. 21. ~ 2017. 05. 05.(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0일

거 창 군 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내역(02월분)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비고
1	경남02도 1442	백*금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폐문부재	1603502605261	
2	96부1905	쥬원 *****어링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번지	폐문부재	1603502605222	
3	41구8653	한*영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길 **	폐문부재	1603502605281	
4	73로7025	김*영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길 **,***동***호	폐문부재	1603502605223	
5	73가4681	김*민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길 **-*	폐문부재	1603502605262	
6	63로4523	권*점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길 **,*층	폐문부재	1603500260521 5	
7	66두1103	신*선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동***호	폐문부재	1603502605239	
8	97머6880	박*진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층	폐문부재	1603502605210	
9	82마1047	이*섭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길 **,***호	폐문부재	1603502605246	
10	서울44로 1199	최*림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로*길**	폐문부재	1603502605229	
11	86가6198	변*규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덕평길 **-**	이사감	1603502605233	
12	08더8006	오*숙	2017.02.16	경상남도 거창군 대평*길 **, ***호	이사감	1603502605270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4 일

## 거 창 군 수

### 1. 조 례 명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업무에 대한 군민 신뢰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 수정함.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수정함(안 제2조)
  - 위원회 명칭 및 제목 수정, 위원의 수를 규정(민간위원 1/3이상)
- 조례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 수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위원회 관련 자구 수정함(안 제5조)
  - 회의 소집 절차 및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 “담당주사”는 법령 등의 직위가 아니므로 수정함(안 제6조)
  - 담당주사 ⇒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 4.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5. 입법예고 : 2017. 4. 24. ~ 2017. 5. 15.(21일간)

##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보내실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 전화 : 055-940-3330
- FAX : 055-940-3288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4 . .
제 출 자	민원봉사실장

## 1. 제안 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업무에 대한 군민 신뢰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수정함.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수정함(안 제2조)

○ 위원회 명칭 및 제목 수정, 위원의 수를 규정(민간위원 1/3이상)

라. 조례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 수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마. 위원회 관련 자구 수정함(안 제5조)

○ 회의 소집 절차 및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바. “담당주사”는 법령 등의 직위가 아니므로 수정함(안 제6조)

○ 담당주사 ⇒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경남도내 개정완료(5): 거제, 김해, 창원, 통영, 창녕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봉사실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소관 관·과·소		민원봉사실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실 장 이 환 철
	팀 장 직위·성명	위생담당주사 이 정 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금의 조성)</b>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li> <li>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li> <li>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li> </ol> <p><b>제3조(기금의 사용용도)</b>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u>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수정함</p> <p>○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의 위임 근거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수정함</p> <p>○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규정사항으로 위임 없음</p> <p>「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삭제</p>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3.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4.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4조(기금운영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민원봉사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봉사실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 기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에는 “운용” 표현이 적절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명칭 및 제목 수정함
-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방식으로 자구 수정함
- 이하 검토안에서 기금 용어 사용하지 않으므로 약칭 삭제함

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항에서 부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구성에도 부위원장을 추가함

○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사람과 위촉하여 위원이 되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위원의 명수를 규정함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함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  
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  
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  
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  
였을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  
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자구 수정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법」 제13조 위원회 기능 규  
정되어있으므로 삭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 상품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삭 제>

○ 위원회 관련 법령 참조하여 자구 수정함(「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3조제4항)

제3조(회의 및 의사)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담당주사”는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도록 수정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7조 등 규정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아니므로 삭제

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민원봉사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94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규정사항으로 삭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규정사항으로 삭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면됨

제15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조례에서 지침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않으므로 삭제

규칙 폐지

○ 전부개정의 경우 기존 조례의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므로(대법원2013.3.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례 등 참조), 현행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 후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칙은 이 조례 부칙에 다시 규정할 필요 있으나, 현행 조례의 부칙 중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칙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를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함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19.] 제89조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정 전반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사항
- 나. 홍보 및 공보에 관한사항
- 다.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사항
- 라. 군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사항
- 마. 법제·쟁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2. 민원봉사실장

가. 창구민원과 민원행정에 관한사항

나. 지적공부의 등록·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사항

다.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사항

마.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4 일

## 거 창 군 수

### 1. 조 례 명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2. 폐지이유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위임근거 조문이 삭제되고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적용 시행하면 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4. 폐지규칙안: 따로 붙임

### 5. 입법예고 : 2017. 4. 24 . ~ 2017. 5. 15.(21일간)

###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보내실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 전화 : 055-940-3330
- FAX : 055-940-3288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4. .
제 출 자	민원봉사실장

## 1. 폐지이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위임근거 조문이 삭제되고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적용 시행하면 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제90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제61조·제6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8.6.>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19.] 제89조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09호, 2016.11.22., 일부개정]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100분의 40
2. 시·군·구: 100분의 60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2013.12.30., 2016.1.22., 2016.7.26.>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1.4.] [총리령 제1349호, 2017.1.4., 일부개정]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②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6.5.27]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93호, 2016.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회계단위)** 이 기금의 회계단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수납취급 금융기관의 지정)** 시·도에 귀속되는 기금의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조(장부)**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

1. 삭 제 <‘16.5.27>
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
4. 삭 제 <‘16.5.27>
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삭 제 <‘16.5.27>
8. 삭 제 <‘16.5.27>
9. 삭 제 <‘16.5.27>
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12. 삭 제 <‘16.5.27>

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회계기관별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재무관은 법 제82조, 제8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결정)** 삭 제<‘98.11.27>

**제8조(수납절차)** ①지정금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 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수표의 발행) 삭 제<'16.5.27>

**제10조(회계보고)** ①기금재무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가장 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결과를 시·도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기보고는 당기분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도 확인보고를 소정 기일내에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기보고로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도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제11조(계산증명서 작성 및 제출) 삭 제<'94. 12. 21>

**제12조(기금의 운영계획수립)**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용자)** ①삭 제<'98.11.27>

②기금에서 용자금을 받은 자는 그 용자의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금융기관은 용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용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④삭 제<'98.11.27>

⑤삭 제<'98.11.27>

**제14조(사업의 집행)** ①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 삭 제<'98.11.27>

제16조(지정금융기관의 보고) 삭 제<'98.11.27>

**제17조(지도·감독)** 해당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원자 또는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용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93호, 2016.5.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76호(2015.10.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 10.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12.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이 아닌 신고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내역을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 76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제93조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펜,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제4조
	2) 제1호가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제4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제4조
	4)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제5조
	5)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제6조
	6)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30만원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제37조제1항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10만원	제7조제4항
		15만원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10만원	제7조제4항
		3만원	제7조제4항
3	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1)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2)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3)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15만원 15만원 10만원	제19조제1항
	다.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제37조제5항
	라.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接客원을 고용하여 유흥接客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7만원 10만원 7만원	제44조제1항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마. 청소년을 유흥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식품接客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제75조제1항
4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제13조
	2)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	
	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接客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接客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10만원	제37조제4항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다.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라.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5만원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5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제40조제3항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제88조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별표 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법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5만원	제6조제1항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제6조제2항
	다.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경우(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	제18조제1항
	라.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10만원	제24조제1항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p>마.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1)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p> <p>2)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10만원</p> <p>20만원</p> <p>5만원</p>	제25조
	<p>바. 유사표시 등 금지</p> <p>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p> <p>2)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p>	<p>5만원</p> <p>5만원</p>	제26조
3	<p>가.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포,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p> <p>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p> <p>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p>	<p>100만원</p> <p>10만원</p> <p>10만원</p>	제24조 제2항·제3항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민원봉사실)

(제정) 2008.03.24 규칙 제1017호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따라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 3조 (납기결정)

과징금을 납부고지할 때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제 4조 (수납절차)

-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해당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그 밖의 과징금 등을 받은 때에는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 5조 (장부)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결의서
2. 납부고지서
3. 기금지출결의서
4. 기금관리부

5. 기금징수부
6. 납부고지서발행대장
7. 기금지출부
8. 기금출연금영수증
9. 기금접수대장

### 제 6조 (신고보상금 등의 지급)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부정·불량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신고대상업무 및 보상금 수준, 지급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정·불량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 7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 8조 (공인관리)

위원회의 공인은 간사가 보관·관리한다.

### 제 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수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일원에 계획된 「장팔리(소로3-5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26.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장팔리(소로3-5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403.0m, B=6.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463-3번지 외 16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4)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 보상조서(토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거창읍 장팔리	84-5	답	40	40	박*금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2	거창읍 장팔리	83 (83-1)	전	409	3	김*화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3	거창읍 장팔리	57 (57-2)	답	3,381	325	오*태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4	거창읍 장팔리	64 (64-1)	전	456	11	안*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				
5	거창읍 장팔리	63 (63-1)	전	698	257	박*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				
6	거창읍 장팔리	612-3 (612-6)	답	1,357	42	진*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7	거창읍 장팔리	104 (104-2)	대	270	12	박*일(216/27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8	거창읍 장팔리	104 (104-2)	대	270	12	권*수(54/270)	대구광역시 달성구 다사읍 서재로27길**				
9	거창읍 장팔리	105 (105-3)	대	97	5	강*우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10	거창읍 장팔리	105-2	대	11	11	강*우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11	거창읍 장팔리	105-1 (105-4)	대	110	33	이*식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12	거창읍 장팔리	106 (106-1)	전	304	37	백*기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13	거창읍 장팔리	107 (107-1)	전	278	15	신*호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				
14	거창읍 장팔리	152 (152-2)	답	908	6	이*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15	거창읍 장팔리	100 (100-1)	전	212	65	서*탁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16	거창읍 장팔리	153 (153-3)	답	990	42	이*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17	거창읍 장팔리	154-1	도로	32	32	조*박(536/541)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8	거창읍 장팔리	154-1	도로	32	32	정*순(5/541)	거창군 거창읍준전6길 **				
19	거창읍 장팔리	97 (97-1)	전	446	11	오*석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 보상조서(지장물)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거창군 장팔리	81	담장	30.3*2.6	78.78	m <sup>2</sup>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김*화				
			바닥	콘크리트	60.0	m <sup>2</sup>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김*화				
			문주 및 대문	벽돌 및 스텐	1.0	식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김*화				
2	거창군 장팔리	84-5	창고	블록 스텐트	14.88	m <sup>2</sup>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박*금				
			담장	블록	40.68	m <sup>2</sup>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박*금				
			매실	20년	1.0	주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박*금				
			가중나무	10년	1.0	군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박*금				
2-1	거창군 장팔리	84-5	마을표석	콘크리트 및 자연석	1.0	식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마*회				
			가중나무	5년	1.0	군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박*금				
			가중나무	10년	1.0	군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박*금				
3	거창군 장팔리	612-3 외	비닐하우스	연동6*7*2.5 3층골조, 스프링쿨러	105	m <sup>2</sup>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관수시설, 자동개폐 시설, 바닥멀칭, 벽체 : 부직포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지지대포함, 개수시설, 함석방수시설,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고압농약 등 살포시설, 전기 등 제반시설 포함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기름탱크	철제	1.0	식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바닥	Con'c	15.0	m <sup>2</sup>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물품이설비	-	1.0	식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포도	7~10년	15.0	주	거창군 길 **	거창읍 장팔	진*수			
			4	거창군 장팔리	104	화장실	블록 스텐트	5.2	m <sup>2</sup>	울산광역시 촌10길 **	북구 명	박*일	
						대문	철제	1.0	식	울산광역시 촌10길 **	북구 명	박*일	
마당	콘크리트	18.0				m <sup>2</sup>	울산광역시 촌10길 **	북구 명	박*일				
감나무	40년	1.0				주	울산광역시 촌10길 **	북구 명	박*일				

5	거창군 장팔리	105	창고	조립식 판넬	18.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가옥2층	벽돌조 슬라브 및 판넬지붕	129.78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담장	블록	21.28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심야전기 보일러	35Kw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스카이라이프	-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차양	썬라이트	5.1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장독대	콘크리트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CCTV	-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강*우	
6	거창군 장팔리	97	가중나무	15년	1.0	군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	오*석	
			울타리	3*1	13.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	오*석	
7	거창군 장팔리	100	창고	블록 스투트	2.6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	서*탁	
			울타리	철제 및 철망	6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	서*탁	
			사과	10년	4.0	주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	서*탁	
			배나무	1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	서*탁	
8	거창군 장팔리	106	가중나무	15년	1.0	군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백*기	
		106	가중나무	5년	3.0	군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백*기	
9	거창군 장팔리	96-3	담장	몽돌붙임 및 철제	17.4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정*수	
			대문	콘크리트 위 몽돌 붙임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정*수	
10	거창군 장팔리	183-5	담장	적벽돌	79.2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테크	목재 6*0.5*H0.5	1.0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화단	자연석	60.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반송	70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주목	30년	1.0	주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주목	20년	1.00	주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공작단품	15년	2.0	주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잔디	-	90.0	m <sup>2</sup>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조형물	-	6.0	점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정원등 (가로등)	-	2.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우수관로	-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정원관련 부대시설포함	-	1.0	식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	이*석	

○ 영농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거창읍 장팔리	57 (57-2)	답	3,381	325	오*태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2	거창읍 장팔리	64 (64-1)	전	456	11	안*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	
3	거창읍 장팔리	63 (63-1)	전	698	174	이*영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4	거창읍 장팔리	612-3 (612-6)	답	1,357	42	진*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5	거창읍 장팔리	105-1 (105-4)	대	110	33	이*식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	
6	거창읍 장팔리	106 (106-1)	전	304	37	이*성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	
7	거창읍 장팔리	107 (107-1)	전	278	15	김*률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8	거창읍 장팔리	100 (100-1)	전	212	65	서*탁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9	거창읍 장팔리	152 (152-2)	답	908	6	이*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10	거창읍 장팔리	153 (153-3)	답	990	42	이*수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11	거창읍 장팔리	97 (97-1)	전	446	11	오*석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 이주비

순번	소재지	지번	가구 원수	주거면적 (㎡)	수령인		비고
					성명	주소	
1	거창읍 장팔리	105	5	93.63	백*덕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세 기본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안 제1조)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삭제함(구 제2조)
-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함(구 제7조)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dean30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 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거창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나.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으로 인해,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과세대상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군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지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이 규칙 중 종전의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보통징수·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등에 관한 조문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 4. 개정 조례안 : 붙임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dean30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8055-940-3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

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 ①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와 제2조1호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17조1항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다. 제27조2항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별지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별지제426호서식으로 한다. 라. 제32조1항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지방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내역	
7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11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12	조세심판원·법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기분	책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 자	담당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 자	담당 장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주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sup>2</sup>)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당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원 <b>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b> <input type="checkbox"/> 법원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체납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 「거창군세 징수조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세 징수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거창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종전 제7조 → 안 제3조)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dean30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세 징수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거창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를 전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군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군세의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체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결손처분,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dean30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8055-940-32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창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거창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창군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거창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균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균세신

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

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3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 결정결의서</p>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군		년시·군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시·군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거창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b>지방세 체납액정리표</b>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 시· 군	납 기	과세번 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시·군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b>주거 확인</b>			<b>재산 확인</b>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b>생활상태 확인</b>			<b>재조사 확인</b>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 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b>결 손 처 분 표</b>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b>조사결과</b>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b>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b>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b>결 손 처 분 표</b>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 - 164호선) 결정(변경)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2-25(2002.06.10.)호로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164호선)」에 대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 04. 26.

### 거 창 군 수

####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 정	소 로	3	164	6	국지 도로	480	거창읍 동변리 514-3번 지	소3-16 7	일반 도로	동변 지구	거고 제25호 (‘02.06.10)	
변 경	소 로	3	164	6	국지 도로	478	거창읍 동변리 514-3번 지	소3-16 7	일반 도로	동변 지구	거고 제25호 (‘02.06.10)	선형 변경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노 선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64 호선	○ 선형변경 - 당초 : L=480.0m B=6.0m - 변경 : L=478.0m B=6.0m	○ 향토문화유적(거창읍 동변리 영사정) 훼손 방지 및 보존을 위한 곡선부 선형 변경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교통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